

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-68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일자 : 2018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제17조제5항제2의2호 추가(2016.7.12.)

2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마포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기 위해 2014년 마포구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임.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36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장학재단은 사무국(사무소)을 두고 장학사업을 수행함.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마포장학생, 성적우수장학생, 특기장학생, 재능장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930명의 학생들에게 1,32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.

3. 사업의 필요성
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에서 하던 장학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임.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 외 자치구에서 출연한 12개 장학재단 중 7개 재단이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함.
- 마포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장학재단 사무실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<타 자치구 장학재단 사무실 현황>

| 구분 | 장학재단 | 위 치 | 사용료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강북구 | 꿈나무키움장학재단 | 강북구청 3층 | 무상 |
| 구로구 | 구로구장학회 | 구로평생학습관 1층 | 무상 |
| 은평구 | 은평구민장학재단 | 은평문화예술회관 2층 | 무상 |
| 송파구 | 인재육성장학재단 | 송파구청 | 무상 |
| 영등포구 | 영등포구장학재단 | 영등포구청 별관 | 무상 |
| 강서구 | 강서구장학회 | 강서평생학습관 1층 | 무상 |
| 성동구 |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| 성동구청 지하 1층 | 무상 |

4.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현황

- 재단설립일 : 2014. 1. 1.
- 기본 재산 : 107억원
- 직 원 : 3명(사무국 직원 2명, 마포구 파견 직원 1명)
- 장학금 지급 현황
 -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총 930에게 약 1,320백만원의 장학금 지급

(단위 : 백만원/명)

| 구 분 | 합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6월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금 액 | 1,320 | 323 | 297 | 284 | 273 | 143 |
| 인 원 | 930 | 227 | 206 | 201 | 191 | 105 |

5. 무상사용 시설 현황

| 소 재 지 | 용 도 | 면적(m ²) | 사용 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마포중앙도서관 4층 마포구 성산로 128(성산동) | 사무실 / 이사장실 | 69.64 | 2017.12.22.~이전시 |

6. 추진경위

- 2018. 4.20 :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신청(장학재단)
- 2018. 5. 3 :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계획수립(교육청소년과)
- 2018. 6.11 : 2018년 제2회 마포구공유재산심의회 의결(행정재산 무상사용 적정)

7. 법적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(2016.7.12.추가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7조

제4조(설립)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.

제17조(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)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

제36조(사무국) ①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